

“공익수의사” 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지난 6월호에서는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번호에서는 이번 6월 중에 개원된 국회 제254차 임시회의기간 중에 “공익수의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입법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중 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일정별 업무추진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 의원입법(신중식의원 대표발의)

- 일자 : 2005. 06. 01(병역법중 개정법률안과 동시 발의)
- 주요내용
 - 수의사를 대상으로 군 대체복무인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
 -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
 - 공익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 발의에 따른 업무추진

- 2005년 6월 08일 : 전국수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최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개별 홍보담당자 선임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토록 전 수의계가 노력
 - 수의장교 병적편입 및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2005년 6월 09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비검토
 -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병역법과 연계하여 처리
 - 수의사에 대한 특혜논란
- 2005년 6월 10일 :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김옥경수석부회장, 강호사무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회기내

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 서울대 수의대 양일석학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면담 및 필요성 설명
- 2005년 6월 15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출
 - 공익수의사의 복무관리강화 및 직장이탈, 근무지이탈 등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강제화 등의 수정(안) 제출
- 2005년 6월 17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제정 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05년 6월 20일 : 국회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 서울대 양일석학장 및 국방부 양한승중령 진술
 - 공익수의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
- 2005년 6월 21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심의 통과
 -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공중보건의 등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통과
- 2005년 6월 22일 : 국회 농림부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
 - 제254차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불투명
 -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계류
- 2005년 6월 24일-26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 병역법개정안과 동시 상정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결정

2.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주요쟁점

가. 법안의 개요 및 입법추진경위에 관하여

- (1) 동 법안은 병역미필 수의사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축방역기관에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1) 제 16대 국회에서 이우재(전)의원 대표발의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2002년 10월), “병역법중개정법률안”(2004년 2월)이 발의된 바 있으나,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축소방침에 따라 정부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된 바 있음.

그 운용과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의 자격요건, 신분, 근무기관 및 담당업무, 급여, 복무 및 병역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법안의 검토에 앞서, 동 법안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입법논의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당초 정부 차원에서는 공익수의사제도가 정부의 병역자원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축소방침과 배치되므로 입법추진이 보류되어 왔으나,¹⁾ 지난 2003년 조류독감 발생을 계기로 하여 수립된 “가축방역 종합대책²⁾”의 내용속에 공익수의사제도의 도입방침이 반영되어,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004. 8.25)”에서 이를 확정·발표한 상태임.

나. 법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 (1) 먼저, 법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제34조의 7의 규정³⁾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병역법」은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신중식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병역법개정 논의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다음, 동 법안의 기본취지는 최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과 축산물위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의 지방근무 기피 또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가축방역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운용함으로써

〈시·군별 수의직 공무원배치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시 · 군 · 수		25	16	8	10	5	5	5	31	18	12	16	14	22	23	20	4	234
배 치 인 원	수 의 직 축 산 직	11	6	8	4	5	1	0	16	2	5	15	9	9	8	13	4	116
		14	10	0	6	0	4	5	15	16	7	1	5	13	15	7	0	118

* 234개 시군 중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된 시군은 116개(49.6%)에 불과함.

지방자치단체 등 가축방역기관⁴⁾의 부족한 방역인력을 보충하려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보임.
최근 몇 년 사이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국내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충분한 가축방역인력의 확보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위생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법안의 기본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3) 다만, 동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개정을 통해 병역대체복무로서의 공익수의사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병역법개정 여부와 상호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 구체적인 운용 사항에 대하여

- (1) 동 법안은 공익수의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과 자격(안 제3조·제4조·제12조·제13조), 배치(안 제5조·제6조·제7조·제18조), 복무(안 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7조), 보수(제1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 제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형평성있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병역대체복무는 일종의 특혜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중보건의 제도와의 단순 비교이외에도, 제반 여건과 차별성을 고려한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특히 안 제11조의 공익수의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보면, 법규정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야간에 개인병원의 당직의사를 겸직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는 등 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바, 그와 유사한 문제점이 공익수의사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무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강도를 보다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 제11조의 복무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였음.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의원 검토내용 및 주요 쟁점

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근래 동·축산물 교역 증가로 인한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4) 법안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가축방역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 하고 있음.

5) 2000년과 2002년의 구제역 발생시 피해액은 각각 3006억원과 1434억원이고, 2002년과 2003년의 돼지콜레라 발생시 피해액은 각각 214억원과 304억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피해액은 1531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유입 가능성에 증대됨에 따라 가축 방역대책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의 강화도 요청되는 등 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의사의 지방 공직 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있어 공익수의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임.

특히, 전체 234개 시·군·구의 약 50%인 116개 시·군만이 수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과대학 학제에서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고(98년), 애완동물 산업의 급신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이에 대해 2002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약 5천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2003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가축 방역 대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본 개정안과 같이 일종의 병역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우리의 현 안보현실과 병역제도 하에서 늘 고려해야 할 사항인 병역자원 확보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 이들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병역자원 확보 문제

병무청의 병역자원 수급 현황(예측)에 따르면 병역자원인 20세 남자는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군 소요는 병력 감축, 대체복무 감축 운영 등으로 현재의 32만명 수준을 2008년부터 30만명 수준으로 감축·유지함으로써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이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0,000명의 병력을 감축 운영하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2만 5,200명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며, 숙련병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연간 5,000명의 병역 자원 소요를 줄이겠다는 절감 노력이 모두 현실화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르더라도 2009년에는 5천명의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록 연간 150명의 소수 인원만을 새로이 공익수의사로 충원한다고 하나,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전국 수의과 대학에 재학하는 총 남학생이 2,243명(한 학년 당 374명)임을 감안할 때 의사·변호사 등과는 달리 수의사는 그 자격자 중 일부만이 장교 또는 보충역인 공익수의사로서의 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체복무제도 신설 및 확대요구 현황〉

구 분	요 구	관련기관
교원병역특례 제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남자교원 육성을 위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를 초·중등 교사로 임용, 5년 의무복무 <p>※연간 1,000명(총 2,000명수준 이상)</p>	• 교육부
정보화요원 제도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취약층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정보화요원으로 선발, 우체국 컴퓨터 교육장 교육담당관으로 26개월 복무 <p>※연간 500명(총 1,000명수준)</p>	• 정보통신부
산림공익근무 요원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증원 <p>※현재 1만명 1만5천명 수준</p>	• 산림청
환경감시대원 제도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환경감시 강화를 위해 환경감시대원을 현역병에서 전환 26개월 의무 복무 <p>※총 2,000명 수준</p>	• 환경부
정보기술(IT) 병역특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자격소지자 특례 확대 및 전자상거래 관리사(서비스분야)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산업자원부
무용분야 병역특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무용경연대회」18개, 전국 발레콩쿠르/전통무용 2개 대회 입상자 예술요원 편입요구 	• 문화관광부
부품소재산업 병역특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병역 특례 요구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의견조회) 	• 산업자원부
정보보호전담 요원제도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 등의 정보보호 업무 전담, 복무기간 5년 	•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영재 병역특례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과학,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 영재에 대해 병역특례(예술·체육 요원과 같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요구 	• 과학기술부
공익법무의신설 해군예비원 제도재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의관 총원 후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의사 중 일부를 '공익법무'로 활용 해양 수산계 대학생으로 학군 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중 현역장교 	• 법무부 • 해양수산부
체육분야 특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원 후 남는 인원을 예비역 장교 병적에 편입,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 대한 특례 요구 	• 문화관광부
이공계특례신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 공황에방을 위한 이공계인력의 대체복무제 요구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신설 요구(연간 600명) 	• 과학기술부 • 국회
문화예술체육계 특례신설 공익변리사 제도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특례 확대 요구 국가유공자, 서민, 학생 등에게 특허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목적 	• 문화관광부 • 특허청
의과학대학원수학자 특례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료자 중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을 위하여 의과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에게 전문연구요원 편입 혜택 부여 	• 국회

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병역의무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규정된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며, 그 비대체적 성격은 물론, 특히 우리의 경우 현역병 복무 부담의 과중 등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병역법은 군 복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복무 부담이 그 형태에 따라 달라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병역법상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를 통폐합하여 병역수행 형태를 단순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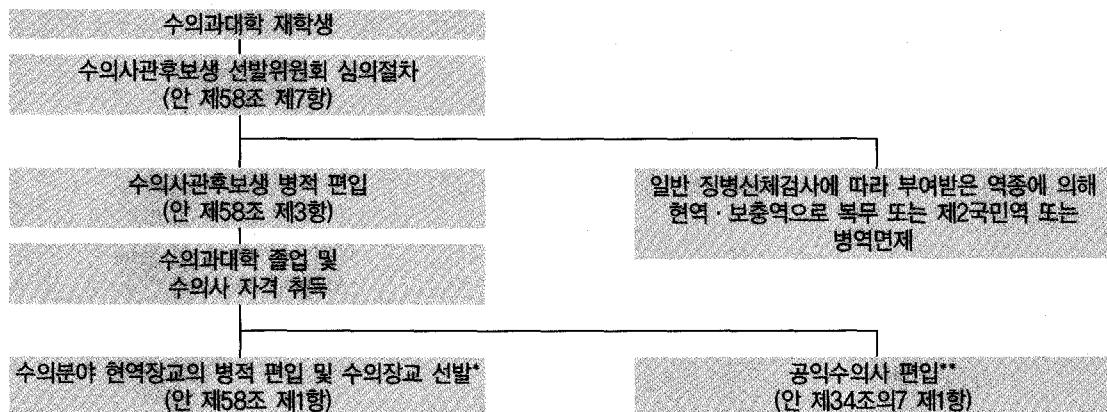
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특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향후전망

■ 향후 추진 일정

- 국회 국방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이번 254회 임시국회에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
-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익수의사제도” 시행에 동의하여 주었음을 표명함에 따라 다음 번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망
-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속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현재 18개 대체복무제도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자체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형평성을 들어 제도 시행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함 

【그림-1】 본 개정법률안에 따른 수의장교 및 공익수의사 임용 계통도⁶⁾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할 수 있음.

- * * ① 수의사 자격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판서근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역시 공익수의사에 편입할 수 있음.

6) 현재는 수의장교를 수의과대학을 졸업 후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각군이 주관하는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조임계급을 중위로 하여 임용하고 있음. 수의 장교에 선발되지 못한 수의사 자격 최득자에 대한 특례는 없음